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90 발의연월일: 2020. 8. 14.

발 의 자 : 인재근·최혜영·서영석

송갑석 · 김원이 · 우원식

서동용・양이원영・기동민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이에 기여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별화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환자맞춤형 의약품이나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과 같은 고부가가 기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업체와 국민에게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의약품행정의 중점을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맞추기 위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도 의약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 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약의 날) 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약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약의 날) ① 국민의 생
	명, 신체 및 건강상의 안전을 확
	보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
	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
	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
	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약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